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¹⁾

윤 덕 경 (연구위원)

박 현 미 (전문연구원)

장 영 아 (전문연구원)

<목 차>

I. 서론

II.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

III.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에는 미성년여성의 유흥업소 취업과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위 '원조교제'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한 통계로 1999년 검찰의 단속결과 적발된 2,603개의 유해업소에 불법고용된 미성년여성은 3,868명(전체 고용된 여성의 48.1%)이고, 그들 중 대다수가 접대부나 윤락녀의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성년여성 중에서도 16세이하가 20.9%나 되어 불법고용된 미성년여성의 저연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³⁾

또한 2001년 1월부터 11월 사이 경찰의 단속활동에 따라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1) 이 연구는 윤덕경·박현미·장영아의 2001 연구보고서 210-17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2) 이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의 2001년 연구보고서 210-17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3) 대검찰청(2000),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2000백서』, p.47.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소개·알선하여 검거된 사람(미성년윤락)은 312명,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이를 매개하여 검거된 사람(청소년성매매)은 7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여기서 미성년여성의 성적 서비스 산업으로의 유입이나 청소년성매매의 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미성년여성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파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여성의 성매매현상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이 2000년 2월 3일 제정(법률 제6261호)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을 비롯한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의 시행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들 법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미성년여성 성매매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입법례 등을 활용하였다. 선도보호시설을 방문하고, 가출청소년들 대상의 거리상담에 참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주최의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에 동행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고서 초안에 대해 교수, 검사, 변호사, 경찰, 연구원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II.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정책

1.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7년 7월 5

4) 수사실무에서는 윤락업소에서 전통형 윤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의 산업형 윤락은 ‘미성년윤락’으로, 인터넷·핸드폰 등에 의한 소위 ‘원조교제’는 ‘청소년성매매’로 부르고 있다.

일에 문화체육부 산하로 발족하였고, 1998년 2월 28일 국무총리소속으로 개편되었다.⁵⁾

위원회는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 조사·연구, 청소년 보호 대국민 교육홍보, 청소년 보호 민간단체·시민운동 지원 등의 기능을 한다. 소관법률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동 위원회의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미성년여성의 성매매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청소년보호·재활센터’설치를 추진하여 가출청소년 등의 일시적 보호 및 가정복귀를 지원하고, 윤락 청소년등에 대한 치료·재활 등을 지원하며, 휴게방, 무인자동숙박업소, 출장맛사지업 등 신종업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여부 및 이용 차단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딸·아들 사고과는 향락문화 추방운동을 전개하였고, 성 피해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에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2001년 5월 24일에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2001년 8월 25일 시행)하여 청소년보호연령의 ‘년(年)나이제’를 도입하여 ‘만 19세미만’을 ‘년 19세미만’으로 적용기준을 조정하였고(청소년보호법 제2조 개정), 일탈 청소년의 교육적 선도·보호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 소속 학교장,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법 제44조의 2 신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법 제49조 제4항 신설).

2001년 8월 30일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1-10호)을 공고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 및 범죄사실요지를 공개하였다. 공개된 성범죄자의 범죄유형은 강간(미수포함) 65명(38.5%), 강제추행 61명(36.1%), 청소년 성매수 27명(16%), 성매매알선 16명(9.4%)의 순이었다.⁶⁾

2. 여성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소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정한 시설, 상담소의 관리를 여성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2001년 10월 현재, 여성복지상담소는 83개소, 선도보호시설은 23개소이다.⁷⁾

청소년성보호법은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3.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청소년들이 청정한 풍토의 면학분위기 아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밝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주관하고 있다.

2000년 자료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정부합동의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및 ‘청소년 성매매

5)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아래 중앙점검단과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 사무국은 기획과, 조사운영과, 보호기준과, 보호지도과의 4개과에 인원은 42명이다. 2001년 예산은 55억원(인건비 16억원, 사업비 38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34.2%가 증가하였다.

6) [http : //www.youth.go.kr](http://www.youth.go.kr)

7) [http : //www.moge.go.kr](http://www.moge.go.kr)

방지대책'에 따라 1999년 12월 15일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지시와 2000년 2월 25일 청소년 성매매사범 단속활동 강화지시를 각급 검찰청에 시달하여 업주와 단속공무원과의 유착비리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0년 12월 4일 「자녀안심운동」 전담부장검사의시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 실질화를 위하여 각 청에 설치된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와의 합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사지휘를 통해 단속활동을 총괄하고,⁸⁾ 인터넷 음란물 불법유통사범, 원조교제사범과 아울러 관계공무원과 업주와의 유착비리를 중점적으로 직접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⁹⁾

4.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이다. 이 중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편부모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윤락여성 및 무의탁여성 등에 대한 보호·상담·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로 소외여성 보호 및 예방활동의 강화를 위한 여성보호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등 요보호여성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언제라도 피난 및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늘푸른여성정보센터'를 열고, 기관별 네트워크 40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 문을 연 이 센터는 피해여성을 위한 종합정보 및 서비스 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출 청소년 후원단체 결연사업 실시, 성매매관련 종합 정보자료실 운영, 임시보호실 및 24시간 상담실 운영 등 성매매에 관련된 미성년여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⁰⁾ 특히 이 센터에서는 동대문 두산타워 빌딩앞, 여의도 고수부지 등에서 주2회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출 및 거리배회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조정과 상담, 숙식 및 안전한 공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알선, 소책자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현재 총 1,042건의 거리상담을 실시하였다.¹¹⁾

B. 법집행기관의 미성년여성 성매매사건 처리실태

1. 개 관

8) 검찰, 경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합동단속반이나 전담검사 및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신고전화의 방법으로 청소년유해사범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대상은 청소년 고용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알선행위, 생활정보지, 폰팅 등 신종 윤락매체를 통한 청소년 상대 윤락행위 및 윤락알선행위 등이다 : 대검찰청(2000),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pp.42~43.

9)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0), 『여성백서』, pp.180~181.

10) <http://women.metro.seoul.kr>

11) 늘푸른여성정보센터 내부자료.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의 시행실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관계기관 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경찰청, 서울 북부·서대문·서초경찰서, 군산경찰서, 부산 금정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방법지도계 계장(8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3명), 서울형사지방법원·가정법원 판사(각 1명), 변호사(2명), 서울시 공무원(4명)과의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 쉼터, 선도보호시설을 각 1군데씩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접하였다.

조사내용은 수사, 재판기관의 사건처리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담소·시설 등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2.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실태

가. 수사기관의 미성년여성 성매매사건 담당부서

경찰에서는 미성년여성 성매매사건을 기본적으로 여성·청소년계가 담당하고 있다.

연구진이 방문한 A경찰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 인원은 8명이고, 그 중 행정요원이 2명, 계장을 포함한 6명은 수사전담요원이었다. 행정요원 중 1명은 청소년선도계획 수립, 캠페인 활동 등을 담당하며, 또 1명은 여성상담실(여성상담)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계가 미성년 성매매사건을 전담하지만, 같은 방법지도과에 속하는 방법지도계가 유흥업소 단속, 미성년자 고용 등을 단속하고, 약취유인, 인신매매사건은 형사계가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미성년자가 관계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여성 성매매사건에 관련된 업무는 여성·청소년계, 방법지도계, 형사계 등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전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는 2001년 경찰청 여성실 신설에 따라 지방청 산하 소년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소년계업무 전체와 형사계의 성폭력, 가정폭력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¹²⁾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성매매 피의자 체포, 피의자 검거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보고, 피의자 검찰송치 등의 업무이외에 지역 여성단체와 경찰관과의 워크숍 개최, 경찰서, 파출소 직원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등의 교양교육 실시, 학생선도·보호활동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계에서 운영하는 여성상담실에는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어 상담업무와 여성피해자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은 주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 많고, 방문,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성상담실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TV, 신문, 책자,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에서 청소년성매매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지검의 경우 별도로 소년부가 있으나 그 밖의 검찰청에는 소년전담검사가 따로 있어 직접 단속활동은 소년부 또는 소년전담검사실에서 하며, 경찰에서 송치되는 청소년성매매사건은 형사부 전 검사에게 맡겨 배당된다.

나. 수사의 방법

경찰에서 미성년여성 성매매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단서는 업소단속, 신고, 인지¹³⁾ 등에

12) 경찰청(2001), 「여성·아동 도우미」, p.7.

13) 범죄인지만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자수 이외의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해 이루어진다.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율락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밝혀지면 업주, 보도실장 등을 구속하게 되고, 또 이웃 업주들이 “어느 업소에 청소년이 일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이 단속, 업주를 검거하기도 한다.

여러 경찰서의 담당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경찰의 단속업무를 통해 서울 미아리 등 사창가의 경우 미성년고용은 많이 없어진 것 같으나 시골·읍·소도시의 티켓다방에서 미성년을 고용하여 율락을 시키는 경우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한 말에서 서울 등 대도시의 사창가 등 눈에 띄는 곳의 미성년고용은 감소했을지 모르나 보도방 등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등으로 방법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방에서의 티켓다방에 미성년고용이 많다는 경찰관의 말은 검찰의 율락업소단속 결과 티켓다방, 단란주점, 율락업소의 순으로 미성년자 종업원이 성년보다 많다는 통계¹⁴⁾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수사는 보통 PC방에서 원조교제를 한다는 청소년의 글을 조회해 그 청소년과 접촉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렇게 해서 발견한 청소년들에 대해 설득과 회유를 통해 가해자인 성인의 출처를 밝혀내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우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사진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한다.¹⁵⁾

다. 피의자 처리

미성년여성의 성매매관련 범죄의 범죄자는 크게 성매수범과 성매매알선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입건’이라고도 하며 범죄인지에 의해 피진정인 등은 피의자가 된다 : 이재상 (1998), 「형사소송법」, 박영사, p.179.

14) 한국여성개발원(2001),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p.79 표3-4 참조.

15) 정상배(2000), “걸어 다니는 매춘, 원조교제수사방법”, 「수사연구」, 2000년 9월호, 통권 203호, p.27.

(1) 성매수범에 대한 사건처리

경찰은 성매수범을 주로 긴급체포로 검거하고 검찰의 신병지휘를 받게 된다.¹⁶⁾ 경찰이 “죄가 불량해서 구속수사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영장신청을 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게 된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더 조사해 보라’고 지시하고 신병결정은 그 이후에 하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초기에는 성매수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이었으나¹⁷⁾ 대상 청소년 1명이 수십명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하는 등 상습적인 경우가 드러난 이후 성매수범에 대한 구속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성매수범의 경우 청소년 대상 원조교제가 처음이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는 불구속이고, 1명의 청소년과 2회 이상 원조교제한 경우 등은 구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성매수범의 범죄가 1회인 경우는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¹⁸⁾

A경찰서의 경우 청소년성매매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3일만에 성매수범 16명을 검거하였고 그 모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4명은 강간, 강제추행 등 중한 범죄인 경우로 성매매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됨으로써 최근에는 구속영장의 기각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B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법 시행 초기에는 성매수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나, 대상 청소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들만 골탕먹는다,’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2)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사건처리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된 보도방의 보도실장, 사창가 업주 등은 구속된다. 유흥주점 등에서 2차로 윤락이 행해지는 경우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1회성 윤락의 경우는 불구속되기도 한다. 보도실장이 보내주는 아가씨 중에 미성년이 끼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는 불구속되기도 한다.

한 경찰관은 “장소제공자 처벌과 관련하여, 장소제공자인 여관업주는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관업주는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고의든, 과실이든 청소년과 성인사이에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처벌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윤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업주들이 미성년을 고용하면 망한다는 생각때문에 피하는 것 같고 또한 손님들 중에도 “미성년자 보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또한 현

16) 2000년 7월 1일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후 입건된 청소년성매매 피의자 총 142명을 분석한 검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매수범으로 검거된 129명 중 피의자 검거방법으로 긴급체포 124명(96.1%), 임의동행, 자수가 각 2명(1.6%)씩이고 현행법체포는 1명(0.8%)으로 긴급체포의 방법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영선(2001), p.26.

17) 검찰의 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 피의자 142명 중 58.5%(83명)이 경찰에 구속되었고, 나머지 41.5%(59명)는 검사와 판사에 의하여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수사에 비해 구속수사쪽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영선(2001), p.26.

18) 검찰의 위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구속영장 기각율은 검찰이 11.2%(20명)이고, 법원은 39%(62명)이며, 2001년도 3개월간(2001.1.1 ~ 2001.3.31)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검찰이 27.8%(27명)이고, 법원은 18.6%(13명)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혐의유무에 관한 소명여부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위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였고, 법원의 기각사유는 범행횟수와 초범인지 여부 등 개인정상을 위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였다 : 민영선(2001), p.28.

재 경찰인력으로는 미성년윤락을 단속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에는 티켓다방 등에서 미성년을 고용하고 윤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¹⁹⁾ 거의 단속을 안하는 실정이며, 업주가 지역유지인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보도방이 미성년자를 많이 데리고 있으므로 검찰·경찰에서 보도방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여성이 업소에 고용되어 나체쇼 등을 하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적 접대행위로 업주가 입건될 수 있다.

C. 법원의 사건처리 실태

법원의 피의자 판결선고 및 대상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판결선고 현황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 1년을 넘은 시점에서 아직 동 법 관련 판결선고에 관한 공식통계가 나오지 않아 청소년성매매범죄 전반에 관한 판결선고 현황을 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후 입건된 청소년성매매사범 총 142명에 대한 사건기록을 분석한 검찰의 자료²⁰⁾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수범 실행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83명 중 집행유예가 51명(6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벌금형 27명(32.5%), 실형은 5명(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선고받은 5명은 모두 이미 동종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들로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자’여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집행유예 선고내용 중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24명(47.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9명(17.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8명(15.7%)의 순이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부터 그 2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다양하였다.

벌금형 선고내용 중에는 벌금 500만원이 14명(51.9%)로 가장 많았고, 벌금 700만원이 4명(14.8%), 벌금 400만원이 3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 이를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와 원조교제를

19) 이러한 사실은 2001년 8월 30일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서 신상공개된 성범죄자 중 성매수알선으로 공개된 16명의 범죄자의 주소지가 광주 광산구, 인천 계양구,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2), 부산 사상구, 경기 안산시(2),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울 강동구, 경기 연천군,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남 마산시로 대부분이 지방임을 알 수 있고, 직업이 주점업(3), 다방업(3), 유흥주점업(2), 휴게음식점업(2), 단란주점업(1), 카페업(1), 무직(1), 부동산중업원(1), 자영업(1), 윤락업(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민영선(2001), pp.33~34.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²¹⁾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윤현주 판사는 2001년 6월 29일 가출한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씩을 선고했다.²²⁾

또한 청소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부산지법 형사 8단독 이종룡 판사는 2001년 7월 27일 10대 소녀와 성인남성에게 방을 내 줘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²³⁾

한편 여관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켰다면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는 2001년 8월 28일 미성년자를 이성과 함께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숙박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²⁴⁾

2. 보호처분 현황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에 의한 대상 청소년 처리실태를 보면, 2001년 1월 1일~11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단속된 604명의 대상 청소년 중 보호자 인계가 502명으로 가장 많고(83.1%), 그 다음이 쉼터입소 39명(6.5%), 형사입건 32명(5.3%), 보호사건송치 31명(5.1%)의 순으로 나타나 보호자 인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보호사건송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 법의 적용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해 아무런 선도나 보호대책 없이 단순히 집으로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매매 청소년들은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오해가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가 개별 청소년의 탈선·타락에서 기인한다는 시각과 결합되어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무조건적인 귀가조치는 청소년의 보호와 재사회화라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21)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001년 4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소녀에게 10만원을 주고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25세 회사원에게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20대와 30대 직장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조교제사범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처벌효과가 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대 미혼 직장인이어서 장래를 생각해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택했지만 사회방위 기능을 위해 액수를 1천만원으로 하였다”며, “자본주의 사회를 등에 업은 부도덕한 범죄에 대해 빛나간 욕구를 좌절시킬 수 있는 수준의 자본주의적 처벌”이라는 점에서 고액의 벌금 선고를 통하여 유사범죄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2001년 4월 6일자, 조선일보 2001년 4월 6일자 참조.

22)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2001년 6월 29일 가출한 17세 소녀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38세의 남성을 비롯하여 작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중소기업 사장, 대학생, 회사원 등 127명중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에서 담당 판사는 “(여자 청소년이) 거의 매춘에 가까운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만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 조선일보 2001년 7월 2일자 참조.

23) 조선일보 2001년 7월 28일자.

24) 조선일보 2001년 8월 29일자.

있다.²⁵⁾

한편, 가정법원에서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1호처분을 내리더라도 단순히 귀가조치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교사, 사업가, 가정주부 등 30~70대의 연령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한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1~2주에 1회 직접 또는 전화로 대화하며, 일기쓰기, 생활지도 등을 도와 주게 된다. 자원봉사의 효과는 자원봉사자들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한번 비행한 경우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위탁한 6개월 이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보호처분을 내릴 경우 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체나마 가정이 있거나 어른이 나서서 지도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하게 된다.

D. 청소년 복지시설의 선도보호실태

여기서는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쉼터의 하나인 서울특별시립 구로청소년쉼터의 운영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개 요

서울특별시립 구로청소년 쉼터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일시보호쉼터로서, 1998년 5월 20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대상은 주로 12~20세 가출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가출청소년 학부모, 학교 부적응 청소년, 일탈 청소년, 노숙하는 장기가출 청소년이나 부모, 학교, 경찰서 의뢰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이다. 사업내용은 일시보호사업으로 숙식제공,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진로지도, 또래상담자교육, 가출예방활동, 홍보 등이다. 이 쉼터의 목적은 첫째,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 복귀시킨다. 둘째, 일시적 충동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선도보호하며 탈선과 비행을 예방한다. 셋째,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순화를 통하여 부모와 친구를 이해하고 건전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²⁶⁾

2. 입소 및 퇴소과정

아이들이 자진해서 오는 경우는 60%정도된다. 플랭카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오거나 경찰서, 학교, 부모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가출한 아이는 가출을 자주 하면 부모가 의뢰하기도 하고, 경찰은 성매매나 가출단속에 걸린 아이를 데려 오기도 한다. 현재 7-8명이 있으며 1년에 평균 10~15명 정도가 있다. 일시보호로 보호기간은 1개월인데, 하루있는 아이도 있고, 3개월 이상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 다니던 아이는 다닐 수 있게 조치해 주는데 주소이전이 안 되므로 복학조치는 어렵다. 그룹홈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다. 이곳은 일시보호시설로 중간단계에 해당된다. 성매매 단속이 많으면 입소자도 많다. 경찰이 의뢰하는 경우 인수인계증을 작성하며, 12~20세 가출소년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고 부모 동

25) 김지선(2001), p.38.

26)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pp.86~87.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쉽게 찾아오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입소형식,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있다.

퇴소사유로는 귀가조치나 중장기 시설, 선도보호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쉼터입소 후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가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쉼터생활

교육은 강화하지 않고 편하게 쉬도록 하며 심성훈련, 십자수, 종이접기 등의 취미교실을 열고 있다. 종이접기를 배워 주위 사람에게 선물하게 되면 자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 24시간 입소가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새벽입소가 많다. 생활지도사 2명이 24시간 맞교대 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취업을 하며, 기술, 학력이 높지 않아 공장취업 정도를 할 수 있다. 공장에는 오래 못 있으며, 1개월 일하고 70~100만원 월급받으면 더 이상 다니지 않기도 한다. 공장취업 생각하는 아이들 정도라면 유흥업소에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성매매경험이 있는 미성년여성을 상담해 보면,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청소년은 처벌 안되니까(구속안되니까) 안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출하고 돈이 없어서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가출한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다. 가출소녀의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쳐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Ⅲ.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의 시행현황을 살펴 본 결과와 외국입법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관련법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의 내용을 개선해야 할 부분과 시행과정에 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기로 한다.

A.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의 개선방안

1.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교행위 개념 확대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이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이용하여 그들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교행위나 신체 또는 도구의 삽입을 통한 유사성교행위 외에도 청소년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자위행위를 해주는 행위, 애무행위(petting), 가학성 변태행위(sadism), 피학성 변태행위(masochism)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⁷⁾

2. 청소년의 연령인식 관련조항 신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범이나 중간알선자가 청소년연령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한 규정이 없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고용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으로는 청소년의 연령확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는 상대방이 청소년의 연령인식에 따른 항변가능성 여부에 대한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일본은 아동매춘등처벌법에서 단순아동성매매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몰랐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매매주선죄나 권유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죄에서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아동의 연령을 몰랐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순아동성매매죄보다 성매매주선죄, 권유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모든 죄에 대해 연령의 인지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외국처럼 연령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죄에 연령을 몰랐음을 이유로 한 항변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청소년에 대한 연령과악 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조정

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남녀이고,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소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서의 미성년은 13세미만의 부녀 또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간음, 추행에 대한 동의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으므로 실제로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제대상은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을 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보다는 상향조정하여 15세, 16세로 규정함으로써 15세나 16세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인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⁸⁾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아직 성적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연령에 대해서는 성행위에 관한 동의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므로 그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신상공개의 법제 정비와 실효성 확보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형사제한적 책임원칙 위반에 따른 이중처벌론이나 평등의 원칙 위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범죄

27) 박병식(1999), “청소년 성보호 법률안에 대한 의견”, 「청소년성보호 입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999. 12. 10, 국회정무위원회, pp.15~16.

28) 이영란(200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 한국법심리학회, p.36.

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공이익의 구현과 국민계도라는 제도의 목적을 중시한다면, 이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존재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성범죄자등록법이나 영국의 성범죄등록법에 의한 성범죄자 등록이나 공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이에 비하면 매우 단순하므로, 영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등록과 공개에 대한 법률을 참조하여 보다 세밀한 법규정들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선정, 공개내용, 공개받을 대상자 및 범위, 공개담당기관, 다양한 공개방법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단순한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범죄자 인권침해 논란을 종식시키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B.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규제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활성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 시행초기와 같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엄정한 법적용 및 단속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성보호법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 실적 평가와 병행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의 미성년고용이 높은 티켓다방, 단란주점 등에 대한 단속과 청소년성매매 관련범죄자의 검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범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미성년여성의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이유로 침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는 단속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숙박업소 단속이 이전과 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행정규제개혁의 이유로 폐지된 숙박업소의 숙박계 작성의 무도 그 부활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송치비율은 5.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를 우선시하는 등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을 받고 의식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1년 12월 10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1·2단독 판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 야간시간대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야간외출금지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 보호관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무인 자동 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야간외출금지명령은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외출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경우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는데, 특별준수사항은 개인 특성에 따라 붙는 일정한 생활제한 조항이다. 야간외출금지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인 상담지도를 받거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수강명령도 함께 받게 된다. 현행 보호처분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시설·프로그램 및 재정지원 상

황)을 고려하여 관련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시설 및 프로그램과 그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인 조치로서 야간외출금지명령을 도입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성매매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마련 필요

이 연구과정에서 만나 본 경찰이나 검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사항은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매수의 대상 청소년은 입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소년에 관한 향후 관리대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가정이 어렵거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 많아 이로 인해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경찰에서의 조사 후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시설들은 수용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청소년들이 입소하였다가 그대로 도망나와도 별 대책이 없어 또 다시 비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1~2개의 시설을 두며, 의료치료를 제대로 해 주는 등 정부가 비행청소년을 인계받아 교육, 관리시키는 기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청소년 복지시설을 마련함에 있어서 선도보호시설의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 즉, 입소자 확보에 있어서 연계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현행법상 시설입소를 위한 행정절차상의 불합리성 제거, 재정적인 지원,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10대, 20대 연령에 의한 시설구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건전 성문화 조성사업 전개

청소년 문제의 발생지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지도 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의 아버지인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아버지인 예비군을 대상으로 건전 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고, 시민단체의 10대 미혼모 방지사업 전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며, 청소년건전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시민단체 및 TV 등에 청소년 성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 성교육 교재개발 및 예방교육실시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체에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연계사업이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5. 인터넷에 대한 대책마련

최근 청소년성매매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앞의 검찰통계자료나 경찰관 면접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성매매 피의자와 청소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보다도 더 강한 감시활동이 요청된다. 또한 대부분의 피의자와 청소년들이 채팅상의 ‘귓속말’이나 ‘쪽지’기능을 이용하여 은밀히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귓속말 등 인터넷 채팅상의 기능을 운영자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²⁹⁾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학교, TV, 신문, 인터넷상의 교육을 통해 성매매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인터넷 채팅상에서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매매 제의를 받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사이버 수사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행위 등을 하면 처벌받고 신상공개된다는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청소년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2000),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창국(2001),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연구』, 통권 제46호, 2001년 여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99~224.
 김은실 외(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정책자료 99-8 대통령직속 여성 특별위원회.
 김지선(2001),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 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7. 18, pp.39~75.

29) 민영선(2001), p.42.

- 대검찰청(2000),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2000 백서』, 대검찰청.
- _____ (2001), 『범죄분석』, 대검찰청.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0), 『여성백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민영선(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상과 대책”, 『청소년 성보호,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1. 4. 27,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서울본부.
- 박지영(2001), “성매매범죄,”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반』 교육자료, 법무연수원, pp.51~73.
- 법무부(2001), 『각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제도』, 법무부.
- 보건복지부(1999), 『선도보호시설 백서』,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2001),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합동단속반 활동지침서』.
-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0), 『원조교제 실상과 대책』,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심영희 외(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정책자료 99~7,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심영희(2001), “청소년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년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형사정책학회, pp.1~17.
- 여성부(2001),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방지 아·태지역 세미나 참가보고서』, 여성부.
- 이경재(2000), “일본법상 아동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반포등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43호, 2000년 가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227~256.
- _____ (2001),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용교(2000), “원조교제에 관한 연구 2 : 10대 청소년 원조교제의 실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성매수 대상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2001년도 청소년성보호 제2차 토론회 자료, 2001.7.26,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 대검찰청(2000),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백서』, 대검찰청.
-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서울협의회(2001), 『청소년 성보호,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심포지움 자료, 2001.4.27,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울협의회.
- 정상배(2000), “걸어다니는 매춘, 원조교제 수사방법”, 『수사연구』, 2000년 9월호, pp.24~28.
- 정 완(2000), “원조교제의 발생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60호, 2000년 7~8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0~18.
- 정인섭 편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2000), 『국제인권협약집』, 도서출판 사람생각.
- 조아미·이명화(2001), “성매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 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7.18, pp.18~21.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외국의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제2권』, 청소년보호위원회.
- _____ (2000),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실태 평가』, 청소년보호위원회.
- _____ (2001), 『일본 청소년관련조례집』, 청소년보호위원회.

- _____ (2001), 『청소년보호업무 직무교육교재』,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법심리학회(2001),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 2001.12.6, 한국법심리학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2000),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보호』, 2000년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2000.5.26,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한상훈(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년 1/2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21~29.
- Council of Europe(2000), *Trafficking in Human Beings, Compilation of the main legal instruments and analytical reports dealing with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Vol. II, National texts(Provisional version), Strasbourg, 6 June 2000.
- Council of Europe(2001), *Legisla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in the field of violence against women*, Vol. I, ALBANIA TO LUXEMBOURG, Strasbourg, January 2001.
- Council of Europe(2001), *Legisla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in the field of violence against women*, Vol. II, MALTA to UNITED KINGDOM, Good practices, Strasbourg, January 2001.
- Geraldine Van Bueren(2000),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Law”, *A Report on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Current National Legislative and Enforcement Responses*.
- 國立國會圖書館 調査立法考査局(1996), 『外國の立法』, 34-5, 6.
- 林陽子(1992), 『女子差別撤廢協約註解』, 國際女性の地位協會 編集, 尙學社.
- 坪井節子(1999), “子ども買春・子どもポルノ禁止法”, 『法學セミナー』, No.539.
- 木村光江(1999), “兒童買春・兒童ポルノ處罰法”, 『法律のひろば』, 12月号.
- 國立國會圖書館 調査立法考査局(2000), 『外國の立法』, No.205.
- <http://women.metro.seoul.kr/>
- <http://www.ecpat.net/>
- <http://www.hms0.gov.uk/acts/>
- <http://www.mct.go.kr/>
- <http://www.moge.go.kr/>
- <http://www.safeschool.or.kr/>
- <http://www.scourt.go.kr/>
- <http://www.sppo.go.kr/>
- <http://www.uscode.house.gov>
- <http://www.youth.go.kr>